

제31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31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일반응시자 : 140명

나.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

: 법무사규칙 제13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2. 응시자격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4. 시험과목

구 분	제 1 차 시 험	제 2 차 시 험
제 1 과 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 2 과 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 과 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 과 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입니다.

5. 시험시행 일정과 공고 방법 등

구 분	시 행 일 정	공 고 방 법	
제 1 차 시 험	장 소 공 고	2025. 7. 28.(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시 험 일 자	2025. 8. 30.(토)	
	합격자 발 표	2025. 9. 24.(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제 2 차 시 험	장 소 공 고	2025. 9. 25.(수)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 험 일 자	2025. 10. 31.(금) ~ 11. 1.(토)	
	합격자 발 표	2026. 2. 4.(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2025년 응시원서 접수 주요 변경사항

□ 원서접수 이원화 및 응시수수료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통합접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동일	[분리접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분리
[응시수수료]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통합하여 10,000원	[응시수수료] 제1차 시험 20,000원 제2차 시험 40,000원

- ✓ 당해 제1차 시험 합격자도 제2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당해 제2차 시험 응시 가능
-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또는 경력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등

(1) 접수기간

(가) 제1차 시험 : 2025. 5. 12.(월) ~ 5. 16.(금)[취소마감일 : 5. 19.(월)]

(나) 제2차 시험 : 2025. 9. 25.(목) ~ 9. 30.(화)[취소마감일 : 10. 1.(수)]

※ 당해 시험(제31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도 반드시 위 제2차 시험 접수기간 [2025. 9. 25.(목) ~ 9. 30.(화)] 내에 제2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전회의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 제2차 시험 접수기간[2025. 9. 25.(목) ~ 9. 30.(화)] 내에 반드시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2항에 의한 경력 응시자는 시험일부면제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해당 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 임용발령사항 출력물(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2025. 9. 18.(목) ~ 9. 30.(화)의 기간 내에 별도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7. 다. 항목 참조).

※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접수방법

(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다) 원서 접수 시에는 미리 3.5cm×4.5cm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cm×4.5cm)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제1차 시험 2만원, 제2차 시험 4만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됩니다.

(3)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애인 등 편의지원

(1) 장애인 등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를 지정된 기간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편의지원 제공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가) 제1차 시험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일[2025. 5. 23.(금)] 내 관련 서류 제출

(나) 제2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2025. 9. 25.(목) ~ 9. 30.(화)] 내 관련 서류 제출

※ 제1차 시험 접수 시 편의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접수기간에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 등)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 ⇨ [시험 공고 및 공지사항](#) ⇨ [2025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제1차 시험의 응시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취소마감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와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로써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시험의 일부 면제

가.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

사 유 구 분	면 제 내 용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차 시험 면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 면제
전회의 시험(제30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u>당해 시험(제31회)에 한하여</u> 제1차 시험 면제

- 나. 전회의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2025. 9. 25.(목) ~ 9. 30.(화)]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2항에 의한 경력 응시자의 경력 서류 제출 안내

(1) 제출기간 : 2025. 9. 18.(목) ~ 9. 30.(화) 18:00까지(토·일 제외)

(2) 제출서류

① 「**시험일부면제신청서**」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양식)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 ⇨ 시험 공고 및 공지사항이나 시험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위 ① 「시험일부면제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음

③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 임용발령사항 출력물(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소속기관의 인사담당자(총무과)로부터 교부 받은 임용발령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기본사항, 호봉발령사항, 요약 등이 아님

- 법원 나의인사 시스템에서 본인이 임용사항 화면을 출력 또는 캡처한 것이나 검찰청 e-사람 시스템에서 본인이 출력한 인사요약카드는 인정되지 않음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접수 시 제출 마감일[2025. 9. 30.(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우편접수 시 반드시 봉투 겉면에 《법무사시험 관련서류 재증》이라고 표기 하여야 함

※ 지연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의 경우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추가로 다시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기간	제출서류
1차 제출	2025. 9. 18.(목) ~ 9. 30.(화)	위 (2)의 ①, ②, ③ 모두 제출
2차 제출*	2025. 11. 3.(월) ~ 11. 17.(월)	위 (2)의 ①, ②, ③ 모두 제출

* 법무사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추가제출 사항

(4) 제출면제

- 2024년 제30회 법무사시험에서 개인정보동의서를 포함한 시험일부면제신청서 및 경력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인정받은 자는 위 (2)의 ①, ②, ③ 서류의 제출이 면제됨(단, 동일한 면제조건인 경우로 한정됨)
- 2024년 제30회 시험보다 이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면제를 인정받았던 자, 2024년 제30회 시험에서 법무사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경력 서류의 추가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제출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력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5) 제출장소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대법원 동관 3층 제335호]

(6) 제출서류 모두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 결과 경력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의 경우 접수된 응시원서를 접수 취소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해드립니다.

라. 경력 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 중 첫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경력 산정에서 휴직 및 직위해제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됩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4802 판결 참조).

※ 경력 서류 심사에 대한 결과는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경력 산정에 관한 문의는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02-3480-60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가. 응시자는 법무사규칙 제15조 및 제15조의2,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 02-3480 -1769]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http://exam.scourt.go.kr>) ◆